

서 면 답 변 서

질의 위원	이경진 위원	소 속	평창군 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환경복지과장)	일 자	질의: 2001. 12. 4 답변: 2001. 12. 5(10:00)
회 의	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행정사무감사(감사활동 2일차)		
<p>【 질 의 요 지 】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근거</p>			
<p>【 답 변 요 지 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근 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(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) 제1항 제2호, 동 시행규칙 제38조(유해조수의 구제허가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 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해조수 피해로인한 구제허가신청(방문 또는 유선 신청함) 2. 담당공무원 현지확인(피해지역, 면적, 작물명, 유해조수명등 조사) 3. 유해조수 구제허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포획방법, 포획면적, 포획수량, 포획조수 종별; 포획허가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해조수의 종류 (환경부고시 제2000-116호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, 까치 및 까마귀류(큰부리까마귀 제외) 2.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·림·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, 멧비둘기, 고라니, 멧돼지, 다람쥐, 청설모, 두더지, 쥐류 및 오리류(다만, 오리류 중 원앙이, 원앙사촌, 흑부리오리, 황오리, 알락쇠오리, 호사비오리, 빨쇠오리,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) 3.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,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.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·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. 야생조수 및 그 알·새끼·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6.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등으로 위사유에 해당될경우 시장·군수가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			